

1. 개정이유

“공직퇴임관세사” 관련 비위 방지를 위해 관세사 등록 신청 시에 “공직퇴임관세사” 여부를 기재하는 등 등록신청서 기재항목을 구체화하고,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·제출하고 5년간 보관하는 등을 내용으로 「관세사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, 관세사 등록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업무실적 내역서 서식을 제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등록신청서 개정(안 제3조의2 및 별지 제1호의2서식)

시행령에 등록신청서 기재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“공직퇴임관세사” 여부 등을 추가함에 따라, 현행 서식에 “공직퇴임관세사” 여부를 추가함

나. 업무실적 내역서 제정(안 제4조의2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)

법에서 정한 공직퇴임관세사 여부, 수임액 및 수임 건수 등 업무실적 내역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업무실적 내역서 서식을 제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4. 22. ~ 6. 2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중 “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영 제16조제2항 및 제3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업무실적 내역서) 영 제21조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.

별지 제1호의2서식,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] 등 록
관세사
[] 등록갱신
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
			3일
사무소명	사무소 소재지		
관세사	성명	생년월일	
	자격증번호	전화	
	자격취득구분 (취득년도)	[]일반 []관세행정경력 ((년도)	공직퇴임 관세사 여부
등록번호	등록(갱신) 기간		

「관세사법」 제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·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사

☐ [] 등록 ☐ 을 신청합니다.
[] 등록갱신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관세사회장 귀하

처 리 절 차



업무실적 내역서

제출인	성명		공직퇴임관세사 여부	(여, 부) ※ 퇴임 시 직급:	등록번호	
	사무소명		사무소 소재지		해당 연도	

(단위: 건, 원)

합계 (A+B +C+D+E)	신고·신청 대리 (A)		청구 대리 (B)		관세조사 대리 (C)		관세·수출입신고 등 상담 조언 (D)		기타 (E)
	건수	총보수액	건수	총보수액	건수	총보수액	건수	총보수액	총보수액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관세사의 등록 신청) <u>영</u>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· 등록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. <u><신 설></u>	제3조의2(관세사의 등록 신청) <u>영</u> 제16조제2항 및 제3항----- ----- -----. <u>제4조의2(업무실적 내역서) 영 제</u> <u>21조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</u> <u>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</u> <u>다.</u>